



제422회국회(임시회)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에 대한
경호 및 경비 예우 배제〉

■ 민형배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7044호)

2025. 2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유상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민형배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4. 12. 27.
3. 회 부 일 : 2024. 12. 2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합니다. 금고 이상 형 확정,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,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됩니다. 다만,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습니다. 부적당한 예우대상에게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

이에,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.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,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호 및 경비 예우를 배제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제7조(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) ① (생략)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1)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 1.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.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.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.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	제7조(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인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
부 칙	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

1) 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그 밖의 예우)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(警備)

현행 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, 기념사업의 지원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²⁾.

하지만,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,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중단하고,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예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여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예우도 중단하여 전직대통령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보임.

2) 제4조(연금)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(報酬年額)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5조(유족에 대한 연금)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,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(遺子女)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,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.

제5조의2(기념사업의 지원)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의3(묘지관리의 지원)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그 밖의 예우)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,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,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,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,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(警備)
2. 교통·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
3.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
4.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

<전직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>

구분	예우의 내용
연금(제4조)	-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 -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유족에 대한 연금(제5조)	-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-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7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30세 유자녀에게 지급
기념사업의 지원(제5조의2)	-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 가능
묘지관리의 지원(제5조의3)	-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지원 가능
그 밖의 예우(제6조)	-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(제1항) -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- 교통·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-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

<헌행법상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중단되는 사유>

구분	사유
①	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
②	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③	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
④	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

개정안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여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예우도 중단하여 전직대통령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보임.

다만,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 대한 공헌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과 동시에 재임 중 중요한 국가 기밀을 취급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함으로써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전직 대통령이 범죄자나 특정 집단의 보복·공작의 대상이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밀 보호, 사회혼란 방지 등 국가적·사회적 이익을 고려할 때 경호·경비를 배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대통령경호처는³⁾ 개정안에 대해 국가안보 및 신변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3)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호대상)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통령과 그 가족
 2.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
 3.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.
다만,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,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.
 4.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
 5.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(行政首班)과 그 배우자
 6.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(要人)
-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.

문 의 처
02)6788-5338